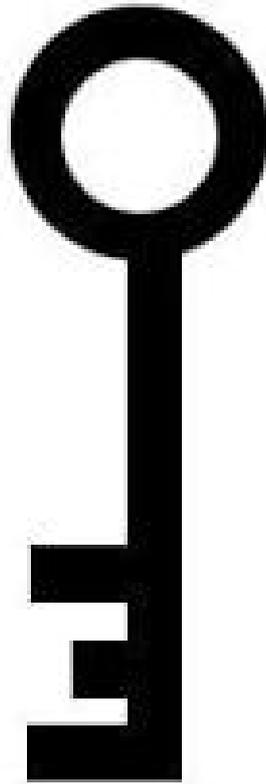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다.’
- 월트 디즈니



박광일의 [SECRET KEY]

고민하는
Point

[6월 평가원 대비 한수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2회)]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45%	12번	(문법) - 지문의 정보 + 개념의 활용 : 중세국어의 선어말 어미
오답률 4위	47%	19번	(문학-고전시가) - 외적 준거(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
오답률 3위	55%	15번	(문법) - 안은-안긴 문장 : 관형절의 생략된 성분 파악
오답률 2위	63%	36번	(독서-법) -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서 제시한 사례에 적용
오답률 1위	66%	24번	(독서-과학기술) -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서 제시한 사례에 적용

[문학] 고전시가 : 윤선도, ‘어부사시사’ / 고전소설 : 홍세태, ‘김영철전’

[문법] 11번, 12번, 15번

[독서] 법 지문 : 양심의 자유(해설 + 분석 자료) / 기술 지문 : 전자식 레이더(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45%) 예측] : 문법 12번 문항

[적절한 선지(정답 선지) 판단][Killer Point]	
㉔	㉔의 '썩크미니라'는 형용사이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지 않았군.
[Killer-Point]	수능 문법은 분명히 '지문'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방향으로 출제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법 개념은 분명히 출제자도 물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답을 도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으로 답을 골라야 한다. 즉, 선어말 어미의 유무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5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았던 문항이다. 기출에서도 이와 같이 출제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문의 내용만 점검하지 말고, 기본적인 문법 지식도 함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름이다'는 의존 명사+서술격 조사의 형태라는 것을 지문의 예시 없이 알아봐야 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다.

[“지문의 정보+기본 개념 고난도 기출] - 홀수 문법편 34p : 2018학년도 수능 11번

Q. 다음 문장에서 ㉑~㉔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 中 일부 발췌]

국어의 단어들은 ㉑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㉒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㉓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㉔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㉒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㉑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㉑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㉒ '맨손으로'의 '맨손'은 ㉒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㉓ '쌓인'의 어간은 ㉓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㉔ '깨뜨리는'은 ㉔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㉕ '모습이'는 ㉔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정답] ㉔

지문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용언의 형태소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한 문항이다. '깨뜨리는'은 용언의 어근 '깨-'에 접미사 '-뜨리-'가 결합하여 어간을 구성한 경우다. 최소한 어간이 무엇이고 어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가부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오답률 4위(약 47%) 예측] : 고전시가 19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선지(정답 선지) 판단][Killer Point]	
④	<추 6수>에서 '명색은 나아오'는데도 '홍수 청강이 슬미디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귀향하는 것도 잊은 채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Killer-Point]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어부사시사」는 4편으로 구성된 연시조로서, 10수로 이루어진 각 편은 고기잡이에 충실하기보다 춘.하.추.동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 풍광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어부의 하루를 노래하고 있다. 또한 매 수의 2행에 삽입된 여음구가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닳을 올리고 뜻을 매달고 노를 젓는 행위 등을 표현함으로써 출항에서부터 귀향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p> <p>→ [보기] 문항에서 선지는 [보기] 내용과 지문의 내용에 대해 1차 해석(변형)을 요구하고, 이어 2차 해석(추론, 확장해석)을 요구하도록 구성한다. [보기]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1차 해석('지문 → 선지'의 적절성)이며, 다음으로는 '지문의 내용'을 다른 부분과 '보기를 바탕으로 한 의미부여' 부분의 연결고리다. 사실은 말이 어려울 뿐, 우리들이 다 하는 것들이다. 일단 지문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보기> 부분과의 관련성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이다.</p> <p>④번의 경우, '명색은 나아오는데도 홍수 청강이 슬미디도 아니한다'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다루었으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도 [보기]에서 다른 내용과 부합한다. 그러나 <추 6수>의 '뜻 내려라'라는 구절로 보아 '귀향하는 것을 잊은 채'라는 지문에 대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다.</p>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18학년도 9월 모평 22번	
Q)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中</p>	
< 보 기 >	
<p>(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p>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O / X)	
<p>[Tip] A가 B를 상징한다. →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선지 A가 B와 관련 있다. → 약화된 선지</p>	
(답 : X)	

[오답률 3위(55%) 예측] : 문법 15번 문항

[적절한 선지(오답 선지) 판단][Killer Point]	
㉔	㉓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㉔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Killer-Poin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㉓ 그는 멀리서 온 조카와 저녁을 먹었다. ㉔ 우리가 먹은 빙수는 이가 시리게 차가웠다.</p> </div> <p>관형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통해 관형절을 찾는 것과, 생략된 성분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관형절은 생략된 성분이 있는 '관계 관형절'과 생략된 성분이 없는 '동격 관형절'로 구분된다. 평가원에서는 '관계 관형절'에서 생략된 성분을 자주 묻고 있으며 관계 관형절이 나왔을 때에는 정답률이 항상 낮다. 물론 동격 관형절을 잊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갔던 공원이 새 단장을 하였다.'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갔던'이 관형절이다. 이때 관형절 '우리가 갔던'이 꾸미고 있는 '공원'을 관형절에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보면, '우리가 공원에 갔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관형절은 부사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로 판단할 수 있다.</p>

[지문의 정보+기본 개념 고난도 기출] - 홀수 문법편 30p : 2019학년도 9월 모평

Q.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㉑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㉒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㉓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㉔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㉕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㉑	부사절	없음
②	㉒	명사절	없음
③	㉓	명사절	주어
④	㉔	관형절	부사어
⑤	㉕	관형절	목적어

[정답] ④ ㉔에서 안긴문장은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한 관형절 '내가 늘 쉬던'으로, 명사 '공원'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래 문장인 '내가 늘 공원에서 쉬었다.'에서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문장 성분인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된 채 안긴문장으로 쓰인 것이다.

[오답] ① ㉑에서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 '자식이 건강하기'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원래 문장은 '자식이 건강하다.'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② ㉒에서 안긴문장은 '-이'가 결합한 부사절 '연락도 없이'로, 서술어 '안 왔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원래 문장은 '연락도 없다.'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③ ㉓에서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명사절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으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원래 문장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⑤ ㉕에서 안긴문장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형절 '아주 어려운'으로, 명사 '과제'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래 문장인 '과제가 아주 어렵다.'에서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문장 성분인 주어 '과제가'가 생략된 채 안긴문장으로 쓰인 것이다.

[오답률 2위(약 63%) 예측] : 독서-법 36번 문항

[구체적 사례가 제시된 [보기] 접근 훈련]	
②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준법 서약서 제출 요구가 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겠군.
⑤	갑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것은 가석방 심사에 관한 법률이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Killer-Point]	<p>→ 이 지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p> <p>1~3문단 : 방향 정보(D) + 사전 정보(B) - '양심의 자유' 분류</p> <p>4~5문단 : 헌법 37조 2항 '양심의 자유' 해석에 대한 2가지 입장과 과잉 금지 원칙</p> <p>6~7문단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 규정 - 주관적, 개방적, 형식적</p> <p>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지문의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문항의 경우, [보기]의 사례에 분류 또는 열거된 개념이나 사례들 중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문항에서도 '준법 서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이 1~3문단에서 제시한 '양심의 자유'들 중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②, ⑤번을 해결할 수 있었다. [보기]의 사례는 본인의 양심을 변경하도록 강요받는 [보기]의 사례는 '양심 표명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유사한 평가원 사례] - 홀수 102p : 2019학년도 6월 모평 23번 [지문과 함께 확인할 것!]	
<p>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 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p> <p>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 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p> <p>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법규'라고 한다.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p> <p>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p>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Q.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 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ㄷ.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 ㄹ.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Tip]

답 : ②

정답은 ㄱ, ㄷ이었다. 학생들이 정답 이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가 ㄹ이다.

ㄹ이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다. 2문단에서는 [A]의 상황에 대하여,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계약 당사자는 법률 내용과 다르더라도 임의 법규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 내용이 법률보다 우선되어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ㄹ의 경우 세입자와 건물주, 즉 계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게 됨을 추론할 수 있다. [A]의 경우 사법의 영역이기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임의 법규에 부합하기에 건물주가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오답률 1위(약 66%) 예측] : 과학기술 24번 문항

[과학기술의 [보기] 접근 훈련]	
[Killer-Point]	<p>기술 지문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문에서 과정과 원리를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핵심정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이 출제되면, 기본적으로 오답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p> <p>24번 문항의 <보기>는 PESA에서 방사 소자들이 방사 시각을 조율하여 전파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파면이 아니라, 마루로 방사시각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을 잡아내야만 했다. 지문에서 파면은 마루와 마루를 연결한 선이라 했고 방사 시각에 따라 파면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문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기>에는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야 했다. 즉, 마루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 방사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p> <p>(a) - 마루 위치 동일 ⇒ '방사시각 동일' 추론 (b) - 마루 위치가 아래 그림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치우침 ⇒ '방사시각'이 점차 늦춰진 경우 (c) - 마루 위치 : 아래 그림으로 갈수록 오른쪽 → 왼쪽 → 오른쪽으로 치우침 ⇒ 위의 2개 그림 : 방사시각이 늦춰진 경우 / 아래 2개 그림 : 방사시각이 빨라진 경우</p> <p>[Tip] 이러한 [보기] 유형을 해결할 때는 [보기]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과 연결해야 한다.</p>
[유사한 평가원 사례] - 홀수 108p : 2014학년도 9월 모평 A형 21번 [지문과 함께 확인할 것!]	
	<p>1895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X선 사진 기술은 단면 촬영을 통해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한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로 진화하면서 해부를 하지 않고 인체 내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p> <p>X선 사진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하고,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얻어낸 것이다. 조사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산란되고 나머지는 조직을 투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다.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 물, 뼈의 순서로 낮아진다. 또한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이런 X선의 세기에 따라 X선 필름의 감광 정도가 달라져 조직의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져, X선 사진은 다른 조직과의 투과율 차이가 큰 뼈나 이상 조직의 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CT이다.</p> <p>CT는 인체에 투과된 X선의 분포를 통해 인체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CT 촬영기 한쪽 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다. CT 촬영기 중심에, 사람이 누운 침대가 들어가면 X선 발생기에서 나온 X선이 인체를 투과한 후 맞은편 X선 검출기에서 검출된다.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이때 공기를 통과하며 감쇄된 양을 빼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공기만을 통과한 X선 세기와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의 차이를 계산하면 얻을 수 있고, 이를 환산값이라고 한다. 즉,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킨다. 그러면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단면 영상을 재구성한다.</p> <p>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back projection)방법이 이용된다. 역투사는 어떤 방향에서 X선이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하면서 경로상에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며 얻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괏값이다.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와 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의 값들이 더해지</p>

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조직에서보다 더 큰 결괏값이 나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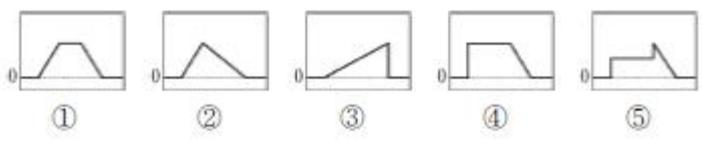
역투사 결괏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CT 촬영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인체의 여러 단면에 대하여 촬영을 반복하면 연속적인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단면 영상들을 조합하여 입체 영상도 얻을 수 있다.

Q.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B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3점]

< 보기 >

옆의 그림처럼 단면이 정사각형인 물체 ㉗과 직각이등변삼각형인 물체 ㉘가 연결된 를 CT 촬영기 안에 넣고 촬영하여 A, B, C 방향에서 구한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때 ㉗의 투과율은 ㉘의 2배이다.

- * X선은 화살표와 같이 평행하게 진행함.
- * 물체 의 밑면을 기준으로 A는 0° 방향, B는 45° 방향, C는 90° 방향의 위치에 있음.



[Tip]

답 : ①

이 문항도 지문에서 제시한 투과율, 두께, X선의 세기, 감쇄된 X선의 총량인 환산값 등 핵심정보를 [보기]에서 제시한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이었다. 우선 4문단에서 '환산값'은 X선이 물체를 통과하며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체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통과되어 감쇄된 총량이 0일 것이고, 물체가 있는 부분은 물체를 통과하며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0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B의 방향에 해당하는 환산값을 그린 그래프의 양 끝 부분은 물체가 없는 부분이므로 환산값이 0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된 X선의 세기가 약해지므로 감쇄된 X선의 총량인 환산값은 점차 커지게 된다. (투과율 ↓ / 두께 ↑ → 환산값 ↑)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자. <보기>에서 ㉗만을 통과할 때는 점점 그 두께가 두꺼워지므로 점점 감쇄된 총량이 늘어날 것이다. 즉 환산값은 커지게 된다. 그러다 ㉗과 ㉘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환산값이 일정해진다. ㉗의 투과율이 ㉘의 2배이지만 그 두께 역시 2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㉘만을 통과할 때는 점점 그 두께가 얇아지므로 환산값이 작아지게 된다. ㉗의 투과율이 ㉘의 2배라고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㉗의 두께가 ㉘의 두께의 2배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12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시제 표현 요소의 여러 가지 의미(11번 관련)

(1)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는’

- 나는 내일 떠난다. → 가까운 미래
- 지구는 태양을 돈다. → 보편적 진리
- 케네디는 중대 발표를 결심한다. →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장감 강조

(2)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겠-’

- 철수는 벌써 도착했겠다. → 과거의 추측
- 그곳엔 지금 눈이 오겠다. → 현재의 추측
- 내일 비가 오겠다. → 미래의 추측
- 내일은 반드시 일찍 오겠습니다. → 의지
-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 확신
-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완곡한 어조

2.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더-’의 인칭 제약

- : 기본적으로 ‘-더-’는 1인칭 주어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 꿈에서 나는 엄마랑 쇼핑을 가더라 → 자기를 객관화하여 관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
- 그 연극을 보니 나는 정말 슬프더라 → 자신의 심리, 감각은 자시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 가능

2. 중세의 시제 선어말 어미(12번 관련)

(1) 과거 : 회상 선어말어미 ‘-더-’

- 주어가 2,3인칭일 때 : 선어말 어미 ‘-더-’ ㉠ (須達) 그똥 쌀을 맞고져 흐더이다
- 주어가 1인칭일 때 : 선어말 어미 ‘-더-’ + 선어말 어미 ‘-오-’ = ‘-다-’ ㉠ 내 룽담흐드라

(2) 현재

- 동사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 네 이제 쪼 묻는다
- 형용사, 체언 + 서술격조사 : 특별한 선어말 어미가 없음 ㉠ 내 오늘 實로 有情호라

(3) 미래 :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

- ㉠ 더욱 구드시리이다

[선택지 해설]

11. ㉔

정답해설 : 답은 ㉔야. 이 문제에서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해당 선어말어미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㉔를 살펴보자. 본래,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더-’는 화자가 자신의 관찰을 통해 인지한 내용을 떠올리며 말할 때 쓰는 것이므로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모르고 언니 가방을 들고 왔더라.’와 같이 무의식 중, 혹은 화자가 자신의 행동, 상태를 남이 관찰하듯 진술하는 경우는 사용할 1인칭 주어를 사용할 수 있어. 어차피 본래의 기능대로 ‘관찰’한 거니까! 더불어, ‘내가 어제 본 영화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도 자신의 심리, 감각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1인칭 주어에도 사용할 수 있어. 즉, 두 문장 모두 ‘-더-’가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맞아.

[오답풀이]

㉑를 살펴보자. 먼저, ‘버스가 곧 출발한다.’는 ‘곧’이라는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는 문장이니까, ㉑에 해당하는 게 맞아. 하지만, ‘선영은 삼촌이 내일 떠날 것을 안다.’는 ‘현재’ 내가 ‘삼촌이 내일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까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 하는 거지. 즉, ㉑에 부합하지 않아.

㉒를 살펴보자. 먼저, ‘그가 드디어 내일 온다.’는 ‘내일’이라는 가까운 미래에 ‘그가 오는 행위’가 실현되는 거니까 ㉑에 해당해. 하지만,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보편적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㉑에 부합하지 않아.

㉓를 살펴보자. 먼저, ‘내일은 미국으로 떠나야겠어요.’는 미국으로 떠나는 행위를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보여. 즉, ㉑에 해당하지 않아. 또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므로, ‘-겠-’이 화자의 바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 즉, ㉑에 해당하지 않아.

㉕를 살펴보자. 먼저, ‘그 문제는 나도 쉽게 풀겠다.’는 ‘나도 문제 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즉, 가능성의 의미를 보여주므로 ㉑에 해당해. 하지만, ‘농촌에서는 벌써 모내기를 끝냈겠다.’라는 문장은 청자가 본 것이 아닌 자신의 추론, 즉 추측을 보여줘. 즉, ㉑에 해당하지 않아.

12. ㉔

정답해설 : 답은 ㉔야. ‘ㅅㅅ미니라’를 분석하면 ‘ㅅㅅㅅ+이+~니+~라’이며, 현대어로 ‘따름이다’가 돼. 자, 그럼 이 서술어의 품사가 될까? 그렇지, 형용사가 아니라 체언인 ‘ㅅㅅㅅ’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야. 즉, 선지에서 ‘ㅅㅅ미니라’가 형용사라는 부분이 틀렸어. 그럼 시제는 뭐야? 그렇지, 현재야. 중세에서는 동사의 경우만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느-’가 붙고, 형용사나 체언과 서술격조사가 결합한 서술어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형태로 현재 시제를 표시해. 그래서, 선지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맞아.

[오답풀이]

㉑를 살펴보자. ‘내 룡담ㅎ다라’의 ‘룡담ㅎ다라’의 형태소 분석을 하면 ‘룡담+ㅎ+~더+~오+~다’가 돼. 자, 여기서 선어말 어미 ‘-더-’와 ‘-오-’를 살펴보자. 먼저, 이 문장은 현대어로 풀이하면 ‘내가 농담하였다’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쓰였지. 즉, 과거야. 중세 때, 과거는 어떻게 표현하지? 맞아. 회상 시제 선어말어미 ‘-더-’를 사용해. 다음으로, 주어는 몇 인칭이야? 그렇지, ‘내’라고 하는 걸 보니 1인칭 주어야. 자, 이렇게 1인칭 주어와 올 때 중세에서는 선어말어미 ‘-오-’를 넣어줘. 그래서, ‘-더-’와 ‘-오-’가 문장에 사용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중세에서 선어말어미 ‘-더-’와 ‘-오-’가 함께 사용되면, 그 둘을 결합해서 ‘-다-’로 사용해. 그래서, ‘룡담ㅎ다라’가 되는 거야.

㉒를 살펴보자. ‘蓮花(연화) | 나느니이다’에서 ‘나느니이다’의 형태소 분석을 하면 ‘나+~느+~니+~이+~다’가 돼. 이때, ‘나느니이다’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나다’로 동사에 해당 돼. 중세에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 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느-’를 사용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느-’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

㉓를 살펴보자. ‘네 아비 ㅎ마 주그리랴’에서 ‘주그리랴’를 형태소 분석하면 ‘죽+~(으)니+~다’가 돼. ‘주그리랴’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죽었느니라’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쓰였지. 더불어, ‘벌써’라는 의미의 부사 ‘ㅎ마’가 쓰여 문장이 과거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중세의 경우,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채로 과거를 표현할 수 있어. 그러므로, 선지가 맞는거야.

㉕를 살펴보자. ‘나랏 小民을 사르시리잇가’에서 ‘사르시리잇가’를 형태소 분석하면 ‘살+~으+~시+~리+~잇+~가’가 돼. 이때, ‘사르시리잇가’의 현대어 풀이는 ‘살리시겠습니까?’로,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어 미래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어떤 선어말어미가 미래를 표현할까? 그렇지, ‘-리-’가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야.

[15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안긴문장]

(1) 명사절로 안긴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ㅁ’	나는 <u>승모가 모범생임을</u> 안다. 우리 등반대가 <u>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u>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우리는 <u>승모가 성공하기를</u> 기대했다. <u>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u> 너무 어렵다.

(2) 부사절로 안긴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u>입이 마르게</u>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태현이는 <u>다리가 붓도록</u>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나는 <u>영지가 잡아서</u>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u>달이 구름에 가듯이</u> 간다.
⑤ 부사형 어미 ‘-ㄴ수록’	<u>해가 갈수록</u>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u>말도 없이</u> 갔다.

(3) 관형절로 안긴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p>예) <u>학교에 가는</u> 철수를 보았다.</p> <p>→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철수가 쓴 글을 읽었다.</p> <p>→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u>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u> 바위가 있다.</p> <p>→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p>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 나는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 →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

[선택지 해설]

15. ㉠

정답해설 : 답은 ㉠이야. 자, ㉡과 ㉢의 문장을 살펴보자. 먼저, ㉡의 문장에서 안긴문장은 ‘멀리서 온’이라는 관형절이야. 이때, ‘멀리서’라는 부사어가 ‘온’이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지. 그럼, 선지의 ‘㉡의 안긴문장 속에는 부사어가 없지만’이라는 게 틀렸어. 다음으로, ㉢의 문장에서 안긴문장은 ‘그가 대학에 합격하기’라는 명사절이야. 이때, ‘대학’이라는 체언에 부사격조사 ‘에’가 붙어 형성된 부사어가 있어. 그래서, 선지의 ‘㉢의 안긴문장 속에는 부사어가 있다’는 맞는 말이야. 하지만, ㉡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의 선지는 최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돼.

[오답풀이]

㉠을 살펴보자. 그런데, 이 선지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해. 맞아. ‘명사절’이야. 본래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 그럼 명사절은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 -기’를 사용해서 만들어.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자. 먼저, ㉠의 문장에서 안긴문장은 ‘색깔이 희기’라는 명사절과 ‘하얀’이라는 관형절이야. 하지만, 선지 ㉠에서는 ‘색깔이 희기’라는 명사절이 중요해. ‘색깔이 희기’라는 명사절 뒤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 문장에서 주어로 역할하고 있거든. 그래서, 선지의 ‘㉠은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가 맞는 거야. 다음으로, ㉡의 문장에서 안긴문장은 ‘그가 대학에 합격하기’라는 명사절이야. 그리고, 그 명사절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지. 그래서, 선지의 ‘㉡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옳은 거야.

㉡를 살펴보자. 아! 하나만 먼저 알고 가자.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지? 그럼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안긴문장은? 그렇지, ‘관형절’이라고 해. 그리고,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 -는, -(으)ㄹ’로 만들 수 있어. 먼저, ㉠에는 ‘하얀’이라는 관형절이 ‘눈’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 이때, ‘하얀’은 본래 ‘눈이 하얗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눈’을 삭제하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 만들어진 관형절이야. 다음으로, ㉡에서는 ‘우리가 먹은’이라는 관형절이 ‘빙수’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 ‘우리가 먹은’은 본래 ‘우리가 빙수를 먹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빙수’를 삭제하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 만들어진 관형절이야. 그러므로, 선지의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맞아.

㉢를 살펴보자. 먼저, ㉢에는 ‘멀리서 온’이라는 관형절이 ‘조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 이때, ‘멀리서 온’은 본래 ‘조카가 멀리서 오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조카’를 삭제하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 만들어진 관형절이야. 그러므로, 선지에서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는 맞아. 다음으로, ㉣을 살펴 볼 건데, 그 전에 부사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문장에서 부사어는 용언,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 등을 꾸미는 역할을 했지. 그 역할을 하는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해. 이러한 부사절은 부사형 전성 어미 ‘-게, -아서, -도록’이나 무사 파생 접미사 ‘-이’ 등을 사용해 만들어.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자. ㉣에는 ‘이가 시리게’라는 부사절이 ‘차가웠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어. 이때, ‘이가 시리게’는 본래 ‘이가 시리다’라는 문장에 부사형 전성 어미 ‘-게’를 사용해 만들어진 부사절이야. 그럼, 선지의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맞는 거야.

㉤를 살펴보자.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체크하자.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절에는 ‘관계 관형절’이라는 것이 있어. ‘관계 관형절’은 안긴 관형절에서 안은문장과 동일한 요소가 생략되는 것을 이야기 해. 자, 그럼 이걸 문제에서 살펴보자. 먼저, ㉤에는 ‘멀리서 온’이라는 관형절이 ‘조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 이때, ‘멀리서 온’은 본래 ‘조카가 멀리서 오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조카’를 삭제하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 만들어진 관형절이야. 즉, 본래 문장인 ‘조카가 멀리서 오다’에서 주어인 ‘조카’를 생략한 관계 관형사절인거지. 그래서 선지의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부분은 맞아. 다음으로, ㉥에서는 ‘우리가 먹은’이라는 관형절이 ‘빙수’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어. ‘우리가 먹은’은 본래 ‘우리가 빙수를 먹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빙수’를 삭제하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 만들어진 관형절이야. 즉, 본래 문장인 ‘우리가 빙수를 먹다’에서 목적어인 ‘빙수’를 생략한 관계 관형사절인거지. 그래서 선지의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는 맞는 말이야.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시가 [16~20번 지문] [윤선도, '어부사시사'] '파랑성을 염(厭)티 마라 진흙을 막는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 (p57) #수능특강 문학 사용 설명서 참고하기

[읽기 전] 문학에서 <보기>는 사전정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보기>	
「어부사시사」는 4편으로 구성된 연시조로서, 10수로 이루어진 각 편은 고기잡이에 충실하기보다 춘·하·추·동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 풍광 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어부의 하루를 노래하고 있다. 또한 매 수의 2행에 삽입된 여음구 가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땀을 올리고 땀을 매달고 노를 젓는 행위 등을 표현 함으로써 출항에서부터 귀항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보기> 핵심 정보 정리	① 춘·하·추·동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 풍광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② 여음구의 기능 1. 흥을 돋우는 기능 2. 땀을 올리고 땀을 매달고 노를 젓는 행위 등을 표현 →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과정

직독 : 지문 훑기 [눈에 띄는 시어(구) 파악 → 시적 상황, 화자(대상)의 정서, 태도]	
강촌(江村) 온갖 꽃이 먼 빗치 더욱 도타	강가 마을의 풍경을 즐기는 화자의 태도
파랑성을 염(厭)티 마라 진흙(塵喧)을 막는다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 → 속세와의 단절

[읽는 중] 어부의 '어부'는 관념적인 존재이지, 실제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원문	현대어 풀이
압개에 안기 짓고 뒷되에 히 비친다 배 떠라 배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낮물이 미러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江村) 온갖 꽃이 먼 빗치 더욱 도타 <춘(春) 1수>	앞 포구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썰물은 거의 빠지고 밀물이 밀려 온다 찌그덩찌그덩 어여차 강가 마을의 온갖 꽃들이 먼 빗으로 바라보니 더욱 좋구나 <춘(春) 1수>
연(蓮)넙히 밥 싸 두고 찬반(饌飯)이란 장만 마라 땀 들어라 땀 들어라 청약립(靑蓊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絲蓑衣)를 가져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흔 백구(白鷗)는 간 곳마다 좃닌다 <하(夏) 2수>	연잎에 밥을 싸고 반찬은 준비하지 마라 땀 흘려라 땀 흘려라 샷갓은 이미 쓰고 있으니, 도롱이를 가져오느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갈매기는 가는 곳마다 좃는구나 <하(夏) 2수>
마람 넙히 부람 나니 봉창(篷窓)이 서늘코야	마른 풀잎 위로 바람이 부니 봉창이 서늘하구나

<p>뭇 달아라 뭇 달아라 녀름 바람 덩흫소냐 가는 디로 배 두어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북포남강(北浦南江)이 어디 아니 도흘너니 <하(夏) 3수></p> <p>넙바람이 고이 부니 매단 돛에 도라오다 돛 내려라 돛 내려라 명색(暝色)은 나아오디 청흥(淸興)은 멀어 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홍수(紅樹) 청강(淸江)이 슬미디도 아니한다 <추(秋) 6수></p> <p>물 7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흔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머흔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世上)을 7리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수></p> <p>어와 저므러 간다 연식(宴息)이 만당토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7는 눈 뿌린 길에 붉근 꽃 훗더딘 디 흥(興) 치며 거러가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설월(雪月)이 서봉(西峰)을 넘도록 송창(松窓)에 빗겨 잇자 <동(冬) 10수>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p>	<p>뭇 달아라 뭇 달아라 여름 바람이 일정하게만 불겠느냐 배가 가는대로 두어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북쪽 포구나 남쪽 강, 어디든 좋지 않겠는가 <하(夏) 3수></p> <p>옆바람이 부니 매달아 놓은 돛으로 돌아왔다 돛 내려라 돛 내려라 어둠은 짙어 가는데 맑은 흥취는 아직 남았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은 강은 언제 봐도 미워지지 않는구나 <추(秋) 6수></p> <p>물가의 외로운 소나무는 어째서 혼자 씩씩하게 서 있는가 배 매어라 배 매어라 험한 구름을 원망하지 마라 속세를 가려준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파도 소리를 꺼리지 마라 속세의 소리를 막아준다 <동(冬) 8수></p> <p>아아 날이 저물어 가니 편히 쉬는 것이 마땅하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에 (석양이 비쳐) 붉게 보이는 길을 흥겹게 걸어가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눈 내리는 밤 달이 서봉을 넘도록 소나무 창가에 기대어 즐기자 <동(冬) 10수>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p>
--	--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BS 독해 포인트(in 사용설명서)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문인 윤선도가 보길도에서의 생활을 읊은 총 40수의 연시조로, 고려 시대부터 전해지던 「어부가」 계열의 작품들을 계승한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각각 10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 속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EBS 연계 POINT		
-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두자.		
표현상의 특징	색채 대비	7는 눈 뿌린 길에 붉근 꽃 훗더딘 디 : 흰 눈 ↔ 붉은 꽃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춘(春)	고기잡이를 떠나는 어부의 모습과 흥겨움
	하(夏)	소박하고 욕심 없는 어옹의 생활과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정서
	추(秋)	자연에 동화된 생활에서 느끼는 속세에 대한 거부감
	동(冬)	정계에 대한 근심과 자연을 예찬하는 마음
여음구 & 후렴구	여음구 (초장과 중장 사이)	각 계절의 10수마다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어부의 하루 일과를 정연하게 보여 줌.
	후렴구 (중장과 종장 사이)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어부가 외치는 소리를 활용하여 사실감을 부여함.
⇒ 여음구와 후렴구는 통일감을 부여하고 운율감을 형성하여 강호에서 느끼는 흥취를 복돋워 준다.		

고전시가 [26~29번 지문][홍세태, '김영철전'] '원래 그대는 정말 남관첩의 소식을 전해 주며 내 마음을 풀어 주시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292) #수능특강 문학 사용 설명서(p269) 참고하기

[전체 줄거리]
<p>김영철은 서관의 양인 출신 토병으로, 19세에 후금과의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멀리 이국땅에서 후금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세 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한 끝에 명나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지문 출제 부분] 그는 명나라에서 다시 몇 년을 거주한 뒤 13년 만에 비로소 고국 땅을 밟는다. 이 세월 동안 그는 후금과 명나라에서 각각 혼인을 하고 자식들까지 두게 된다. 이런 까닭에 그에게 고국으로의 귀환은 그리워하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처자를 버리고 떠나왔다는 점에서 평생의 괴로움이기도 하다. 그의 삶은 고국에 돌아와서도 평탄치 않다. 중국어와 만주어를 두루 안다는 이유로 청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조선군의 일원으로 계속 징병되었고, 59세의 노령이 되어서까지 산성을 지키는 수졸의 임무를 맡아야 했다. 그는 자모산성을 지킨 지 20여 년 만에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했다. 19세부터 진 군역을 죽어서야 비로소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p>

[읽기 전] '<보기>'를 가이드라인으로 사건 진행 과정을 조망할 수 있다.

<보기>	
<p>「김영철전」은 역사적 전환기인 명·청 교체기에 살았던 한 인물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우방국 진영으로 탈출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일념으로 조선으로 돌아온다. 귀국 후에도 다시 종군(從軍)을 하며 공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나라에서는 적절한 포상을 하기는커녕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김영철전」은 주인공의 이러한 파란만장한 생애를 중심으로 조선의 곤혹스러운 상황, 백성이 겪어야 하는 고초, 가족 이산의 아픔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다.</p>	
인물의 상황	청나라의 포로가 됨 → 명나라로 탈출 → 고국으로 귀환
인물이 겪는 고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나라에서 포로로서 겪는 고초 2. 명나라로 탈출한 후 조선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겪는 고초 3.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나라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겪는 고초

[읽는 중]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인물의 과거를 유추해볼 수 있다.'

<p>1630년, 영철이 명나라 등주에 정착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10월, 조선의 진하사* 선박이 북경으로 가기 위해 등주에 머물렀다. 뱃사공 중에 이연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영철과 같은 고향 마을 사람이었다. 영철은 조선의 사행선이 등주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무슨 소식이나 얻어들을까 하여 배를 찾아갔다. 무심코 배를 둘러보던 영철은 배 위에서 한 낯익은 사람을 발견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고향 친구 연생이었다. 영철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연생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다. 처음에는 연생이 영철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영철임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반가워하다가 서로의 소식을 물었다. 연생은 그토록 궁금해하던 고향 소식을 영철에게 전해 주었다. 그 내용은 곧, 영철의 아버지는 안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할아버지는 동생 영화의 아들 이룡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외가로 돌아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철은 10여 년 만에 듣는 가족 소식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통곡하였다. 한참 뒤 정신을 수습한 뒤에 영철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고, 연생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였다.</p>

“여보게, 연생이. 내가 후금 땅에서 도망하여 구사일생으로 이곳까지 온 것은 오로지 이곳에서 조선의 사행선을 얻어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네. 이제 천만다행으로 친구를 만났으니, 원컨대 자네는 제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게.”

연생은 이야기를 들은 뒤, 사신 일행이 북경을 다녀온 뒤 돌아가는 배편에 태워 주기로 약속하였다. **영철이 연생을 만난 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 눈물 자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이상하게 여겼으나 더 물어보지는 않았다.**

이듬해 봄, 조선의 사신 일행이 북경에서 명나라 황제를 뵈고 등주로 돌아왔다. 그동안 떠날 날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영철은 이제 막상 배가 다음 날 아침 조선을 향해 떠난다는 소식에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날 밤 영철의 아내는 등축을 밝히고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평상시와 달리 초조해하고 조바심을 내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등주 부둣가에 조선의 사행선이 정박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남편이 자신과 자식들을 버려두고 조선으로 가는 일이 생길까 두려웠다. 영철 역시 아내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심한 갈등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복잡하였다.

(중략)

이듬해 북경에 다녀온 사신 일행이 등주로 돌아오자 영철의 아내가 다시 와서 물었다.

“조선이 병자년 전쟁에 청나라에 항복하여 이제 이 뱃길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제발 낭군님의 소식을 전해 주어 내 마음을 풀어 주시오.**”

연생이 여인의 마음을 딱하게 여겨 마침내 영철이 조선으로 돌아간 일을 다 말해 주었다. 영철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손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내의 오빠인 유년 역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영철은 효자로다, 대장부로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부터 고국으로 돌아간다더니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다. 누가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있으랴! 내 누이가 비록 과부가 되었으나 실로 그 부모에게 효자가 되었으니 어찌 영철을 탓할 수 있으랴.”

1636년 겨울, 후금의 왕은 나라 이름을 ‘청(淸)’이라 하고,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였다.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들어오더니 곧바로 남한산성을 포위하여 석 달 만에 인조 임금의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군사를 물러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평안도 영유현에 고산과 한윤, 공유덕과 경중명 등의 장수와 군사를 남겨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진을 치고 있는 가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평안도 감사 민성휘는 영유현령 이회로 하여금 청나라 장수를 돕게 하였다. 이때 영철은 고향 영유현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영유현령이 영철이 청나라 말과 명나라 말, 조선어 세 나라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통사로 삼아 청나라 진영을 다니도록 하였다.** 영철의 나이 서른일곱 살 때의 일이었다. 영철이 영유현령의 명을 받고 청나라 진영에 가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청나라 장수 한 명이 영철을 보고 소리쳤다.**

“너는 거기 섰거라. 너는 내 숙부 아라나 장군의 종이 아니더냐? 네가 전에 몰래 숙부의 말을 훔쳐 도망하여 숙부께서 늘 분하게 여기셨는데, **마침 잘 만났구나.** 이제 내 너를 잡아가 숙부께 바칠 것이다.”

그리고는 군사를 시켜 영철을 끄꽂 묶게 하였다. 끄꽂없이 청나라로 끌려갈 판이었다. 영철이 없으면 군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영유현령은 청나라 장수에게 영철을 놓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청나라 장수가 요청을 거절하자 현령은 그에게 담배 열 근을 선물로 바치고, 또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주어 아라나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제야 청나라 장수는 노여움을 풀고 영철을 풀어 주었다. **뒤에 현령은 그 말값을 영철에게서 받아 냈다.**

- 홍세태, 「김영철전」 -

* 진하사: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파견하던 축하 사절.

* 가도: 평안도 철산군에 있는 섬.

어휘(in 사용설명서)	
사형선	외국에 왕래하는 사신(使臣) 일행을 태우는 배.
등축	등불과 촛불을 아울러 이르는 말.
현령	현(지방 자치 단위)에 둔 지방장관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BS 독해 포인트(in 사용설명서)	
<p>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인 홍세태가 지은 소설이다. 주인공 김영철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군역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후금을 치기 위해 출정한 도원수 김홍립 부대의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고 명나라로 망명한 뒤 조선으로 돌아오는 김영철의 기구한 인생 역정은 당대 민중의 기구한 처지를 보여 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이 겪은 이산의 아픔과 중군의 괴로움, 군역의 가혹함 등을 빠짐없이 보여 줌으로써 당대 역사를 민중의 입장에서 조망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p>	
주인공 김영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이한 능력 보유 X • 영웅적인 면모 X <p>⇒ 당시의 일반적인 민중 → 전쟁 속에서 민중들이 겪는 고초를 효과적으로 드러냄</p>

EBS 연계 POINT	
-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두자.	
<p>[주인공보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 주목] 이 작품은 주인공의 생애 전반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전'과 달리 주인공의 업적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역의 의무 때문에 전란에 참전했다가 온갖 고초를 겪으며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 간 주인공의 삶을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라는 주인공의 삶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당대의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함.</p>	
갈등 양상	<p>이 작품은 김영철이라는 한 평민 출신 인물을 중심으로 17세기의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당대 민중들의 보편적 애환을 몹시 장대한 스케일로 그려낸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라는 주인공의 일대기가 서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일대기란 것이 다수의 주변 인물들이 포진한 가운데 그들과 더불어 현실과의 힘겨운 갈등과 대결을 벌여나가는 양태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작품의 중추적 갈등은 인물 간의 적대적 행동 양식 따위가 아니라 다른 아닌 '현실 세계와의 대결'이다. 서술자의 시선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보조 인물의 현실 삶의 애환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데까지 미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작중 인물이 하나같이 현실의 역경을 헤집고 살아가는 형국으로 그려져 있다.</p>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법[33~38번 지문][양심의 자유]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반면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취지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나타내고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다시 양심을 표명하거나 혹은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인 ‘양심 표명의 자유’와 양심에 반(反)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인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인 ‘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고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즉, 양심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내심(內心)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사회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지만, 양심이 외부로 나타날 때에는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양심 형성의 자유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심의 형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단지 양심 형성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보호하는 취지가 반감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해석의 ㉡다수설에서는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실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게다가 기본권이라고 해도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어떤 법률의 기본권 제한이 이 한계를 준수했다면 합헌적 제한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헌적 제한이 된다. 헌법 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기본권 제한이 합헌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 금지 원칙** 같은 위헌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과잉 금지 원칙에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원칙, 제한의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 제한의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는 양심을 내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에서도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 의식을 말하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소의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느낄 정도의 무게와 진지함을 갖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양심을 주관적·개방적·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심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옳고 그름의 기준인 도덕관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배치되는 도덕관념에 따라 양심을 형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양심의 자유가 문제 되는 것은, 대개 특정 사안에 관해 사회 내 다수의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할 때이다. 헌법 재판소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양심 형성의 기초임을 명시하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양심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심은 비합리적 믿음이나 일관되지 않은 가치 체계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고 헌법은 이러한 양심도 보호해야 한다. 만약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가치 체계에 기초한 양심만 보호의 대상으로 삼으면 일단 어떤 가치 체계가 합리적이고 정합적인지 국가 혹은 법원이 판단해야 하므로, ㉞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19조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보호 대상인 양심의 원천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는데, 헌법 재판소의 양심 규정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양심이나 헌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양심에 대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정도의 무게와 진지함을 갖춘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격적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된 양심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양심의 내용이 아니라 양심의 형식을 규정한 것이다. 양심상 옳다고 여기는 내용과 관계없이,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지만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반면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D)따라서 양심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취지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첫 문단은 누구보다 잘 읽어야 합니다. 차분하게만, 조금 속도를 줄여 읽으면 가볍게 흘러갈 수 있는 내용이니, 한 번에 잘 안 읽었던 학생들은 조금 감속해 봅시다. 헌법 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 놓고 나니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모를 것 같아, 기본권의 개념(C)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은 '반면' 그 이후가 되겠네요. 결국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나봅니다. '이때', '따라서' 이후의 문장은 보통 필자가 결론을 내리거나 정리하는 말이기 때문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글의 방향(D)을 잡아본다면, 아무래도 양심의 자유가 법률로써 제한이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전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일일이 생각하며 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설명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시험 때 그냥 읽고 푸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출에 자주 나오는 글의 흐름을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머리를 써서 생각하지 않아도 이 흐름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문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나타내고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다시 양심을 표명하거나 혹은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인 '양심 표명의 자유'와 양심에 반(反)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인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인 '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우선 양심의 자유를 설명하려나 봅니다. 양심의 자유가 제약되는 조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요. 역시 기출이라는 지문의 흐름에 익숙하다면 이런 흐름도 익숙할 것입니다. 일단 양심의 자유를 설명해 놓고 그 상태에서 양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지요. 2문단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단어는 '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차이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정리부터 하고, 실전에서의 독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 형성의 자유	외부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나타내고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①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을 표명하거나 혹은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
		②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에 반(反)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③ '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	

일단, 이런 구조입니다.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양심 실현의 자유에는 ①, ②, ③의 세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모두 이해하려고 치면 개념 정보가 쏟아져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일단 제 수업 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사전 정보(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주제나 중심 화제를 설명하기 위해 깔아주는 정보들을 사전 정보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과 같은 느낌입니다.(그러니까 이 2문단의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보이면 좋습니다.) 주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개념들을 교과서적으로 나열하는 느낌이 들면 보통 사전 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전 정보라는 것은 무조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흐름이 보인다면 도움이 됩니다. 사전 정보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깊게 묻지 않습니다. 즉 차분하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지만, 정보량이 쏟아지거나 말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명사 위주로 기억이나 하며 내려갑니다. 즉 정보량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단 이해를 포기하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어보기는 할 테니까 왔다갔다 할 준비만 하자는 것이지요.

정말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의 '차이'는 보면서 읽었습니다. 이때는 뒤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럴 여유가 있었어요.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면, 양심 실현의 자유는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읽어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했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그냥 차분히 읽으면서 양심 표명, 부작위, 작위 정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작위와 작위는 기출은 아니지만 교육청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뒤에 참고 지문으로 소개할게요. 부작위는 하지 않는 것이고요. 작위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2문단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고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즉, 양심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내심(內心)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사회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지만, 양심이 외부로 나타날 때에는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까 2문단에서 저처럼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의 차이가 보였던 학생들은 아마 여기서 더욱 뭔가를 확실하게 될 것이고요. 아까 2문단에서 안 보였던 학생들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드렸듯이 저도 그냥 한 번 푼 다음에 해설을 바로 쓰는 거라서 처음에 읽을 때 무슨 내용이 뒤에 나올지 모르는 느낌으로 읽었고, 그 내용이 그냥 뒤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실전에서 지문 읽을 때 뒤에 나올 것들을 모조리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충실히 읽는 것이지요. 내용 정리하자면,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자 상대적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양심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 보장받지만, 양심이 외부로 나타나는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차이'는 너무 중요할 것이고,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한 마디 더 첨언하면, 아까 2문단에서 양심 실현의 자유 3가지 정리했잖아요. 뭐 이 자유 모두 경우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3문단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양심 형성의 자유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심의 형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단지 양심 형성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보호하는 취지가 반감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해석의 다수설에서는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실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게다가 기본권이라고 해도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역시 흐름이 보이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양심 형성의 자유를 뜻한다고 주장한다.'라는 문장을 보면 기출에 익숙하거나 글을 좀 잘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닐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나오지요.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기 보다는 '일부에서 양심 형성의 자유만 양심의 자유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건 아니래. 다수설에서는 양심 실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대.' 정도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다 이해해버렸다면, 뭐 강사가 굳이 개입할 것이 없지요.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시면서 가시는 거고, 보통은 실전에서 그냥 이 정도의 흐름으로 읽어 내려 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실전에서 들어와야 하는 내용과 흐름만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의 독해와 맞춰보시면 됩니다.

양심의 자유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당연히 우리는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비중을 둡니다.)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고 양심 실현의 자유에는 세 가지(양심 표명, 부작위, 작위)가 있다.(사전 정보 - 명사 위주로 기억)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면에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보장 받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는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제한을 받기도 한다.(차이) 이런 점에서 일부 시각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양심 형성의 자유만을 뜻한다고 보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양심 실현의 자유 역시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이유는 몰라도 일단 결과적인 흐름만 챙깁니다.)

-----4문단

그런데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어떤 법률의 기본권 제한이 이 한계를 준수했다면 합헌적 제한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헌적 제한이 된다. 헌법 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기본권 제한이 합헌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 금지 원칙 같은 위헌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과잉 금지 원칙에는 ①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원칙, ②제한의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 ③제한의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이전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차분하게 읽으면, 기본권 제한 역시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양심의 자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과잉 금지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잉 금지 원칙의 세 가지는 저는 그냥 살짝 읽으며 내려갔습니다. 굳이 정리하자면 ① 제한은 최소한 ② 제한은 정당해야 ③ 제한 수단이 적합 이것인데, 사실 차분하게 읽고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애깁니다. 어쨌든 기본권을 제한하였을 때 위헌적이지 않으려면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문단

‘한편,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는 양심을 내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에서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 의식을 말하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소의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느낄 정도의 무게와 진지함을 갖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양심을 주관적·개방적·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심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한편’이 나오면 이전과는 다른 내용을 말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한편’이 거의 지문 후반부에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문단 마지막 문장, ‘양심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6문단과 7문단은 한 의미 단위가 됩니다. 즉 1-5문단까지 한 흐름이었다면, 6-7문단 역시 관련은 있으나 다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6-7문단의 내용이 출제가 될 것임을 대놓고 표명하는 것입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이 내용을 굳이 쓰지 않아도 글의 흐름이 유지되는데 넣었다는 것은 반드시 묻겠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부분의 ‘한편’의 의미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양심을 내용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양심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 」 부분은 ‘그렇구나.’ 하면서 읽었고요. 그러면서 그냥 주관적, 개방적, 형식적(의미는 명확히 모르지만) 그냥 기억하며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규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테니 일단 가볍게 내려갑시다.

-----6문단

옳고 그름의 기준인 도덕관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배치되는 도덕관념에 따라 양심을 형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양심의 자유가 문제 되는 것은, 대개 특정 사안에 관해 사회 내 다수의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할 때이다. 헌법 재판소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양심 형성의 기초임을 명시하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양심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심은 비합리적 믿음이나 일관되지 않은 가치 체계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고 헌법은 이러한 양심도 보호해야 한다. 만약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가치 체계에 기초한 양심만 보호의 대상으로 삼으면 일단 어떤 가치 체계가 합리적이고 정합적인지 국가 혹은 법원이 판단해야 하므로, ㉞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19조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보호 대상인 양심의 원천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는데, 헌법 재판소의 양심 규정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양심이나 헌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양심에 대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정도의 무게와 진지함을 갖춘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격적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된 양심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양심의 내용이 아니라 양심의 형식을 규정한 것이다. 양심상 옳다고 여기는 내용과 관계없이,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지만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저는 일단 이 부분 읽으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딱 떠올랐어요. 아마 출제자 분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지문을 출제하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아니었다면 죄송합니다ㅠㅠ 출제자님) 수능 지문 자체가 원래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은근히 내포하는 경우가 많죠. 2017학년도 6월 평가원에 인공지능경망 지문 나왔을 땐, 알파고가 이슈였던 측면이 있고, 2018학년도 9월 평가원의 집합의례 지문은 촛불집회를 내포한 지문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실전에서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6문단의 내용이 기억이 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주관적, 개방적, 형식적’이라는 말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7문단은 헌재가 양심을 규정한 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분하게 읽으면서 그냥 이해가 되신다면 이해하시면 되고(강사의 개입이 필요가 없죠.) 최소한 ‘주관적, 개방적, 형식적’ 이 세 가지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는 흐름은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정리라는 것을 해야 하니까 각각 정리는 한 번 해 볼게요. 인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는 양심을 내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에서도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 의식을 말하되,(6문단)

→ 헌법 재판소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양심 형성의 기초임을 명시하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양심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7문단)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1문단)

→ 만약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가치 체계에 기초한 양심만 보호의 대상으로 삼으면 일단 어떤 가치 체계가 합리적이고 정합적인지 국가 혹은 법원이 판단해야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19조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보호 대상인 양심의 원천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는데(7문단)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소의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느낄 정도의 무게와 진지함을 갖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6문단)

→ 헌법 재판소는 양심에 대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정도의 무게와 진지함을 갖춘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격적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된 양심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양심의 내용이 아니라 양심의 형식을 규정한 것이다. 양심상 옳다고 여기는 내용과 관계없이,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지만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7문단)

내용이 이렇게 인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전에서 이렇게 다 연결하며 읽기는 힘들죠.

그렇기에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실전에서는 이 정도의 흐름은 최소한 타야한다는 것과 무엇이 보여야 하는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왜 양심을 이렇게 규정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이유를 각각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흐름은 보여야 왔다갔다라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최소한입니다. 그 와중에 양심은 주관적이기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양심의 원천에 개방적이어야 하고, 양심상 옳다고 여기는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지만 고려하기에 양심의 형식만 규정했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면 저는 너무 고마운 것이고요.

제 설명의 초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즉 배경지식도, 살아온 배경과 문화도, 독해력도 모두 다르지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야 하는 최소치와 이해가 됐을 때의 최대치를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치와 최대치 사이, 어느 지점에 있거나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를 끝낸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문제 풀이] 2017년 10월 교육청 - 긴급 피난과 의무 충돌

(이 지문은 모의고사 지문과 내용상으로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작위', '부작위'의 소재가 있고, 지문이 좋아 실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㉗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 왔다. 한 사람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무 충돌이라 한다.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작위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로 구분된다.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부작위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한 것을 말한다. 가령 위의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의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충돌 형식들이 모두 의무 충돌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형법학자들은 ㉘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이때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위협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㉙ 피하려 했는데, 좌측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㉚ 꺾어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 핸들을 꺾는 작위에 의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의무 충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의 법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 자체가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작위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즉 앞선 사례에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않고 좌측으로 꺾어 자신의 법익을 희생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담당 의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행위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무 충돌은 대개의 경우 작위 의무 간의 충돌을 ㉛ 뜻한다.

의무 충돌을 작위 의무 간의 충돌로 한정한다면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와 서로 동등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가치가 낮은 의무를 희생하고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형법학의 일반적 견해이다. 왜냐하면 복수의 의무 중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와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로 ㉜ 나눌 수 있다.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㉝ 일러 위법성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 그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행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위법하다면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의 행위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동등한 가치의 의무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있지만 다만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책임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성립하지만 의무 충돌에서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면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위자가 의무 충돌 상황을 유발한 것이 아닐 때라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은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이다.
- ④ 의무 충돌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가 위법 행위를 하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⑤ 위법성 조각설은 만약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면 의무 충돌 상황에서의 의무 위반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에게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의무 충돌은 법적 의무의 충돌이어야 하는데, 부작위 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 ③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의무만이라도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 ④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동시에 있을 때 행위자가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 ⑤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이 있다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3. 밑줄과 <보기 1>을 근거로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1 >

행위자는 더 높은 가치 혹은 적어도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생명과 생명 사이의 법익 충돌이 있는 경우 생명의 수의 많고 적음이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더 고귀하다고 하여 생명 가치의 경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 보기 2 >

- a. 담당 의사가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 b.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남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형법학자들이 있겠군.
- c. 담당 의사가 출산을 앞둔 여성과 그녀의 남편의 생명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설 입장에서는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 ① a ② c ③ a, b ④ b, c ⑤ a, b, c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떤 선로에서 한 량의 빈 객차가 역으로 돌진하고 있다. 역에는 승객을 태운 객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충돌한다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지한 선로 관리자가 돌진하는 객차의 선로를 변경하려 했더니 그곳에는 이미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선로 관리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의 노동자는 선로 관리자가 예견한 대로 피해를 입었다.

- ① 선로 관리자는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두 의무 사이에서 어느 한 의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 ③ 역에 정차한 객차 승객들의 법익과 선로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충돌로 볼 수 있다.
- ⑤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위난과 관련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긴급 피난 인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5. ㉠~㉥의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이곳에서 암전히 몸을 피하고 있어라.
- ② ㉡ :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했다.
- ③ ㉢ :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
- ④ ㉣ :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으면 한다.
- ⑤ ㉤ : 사람을 일러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정답 해설] - 기출이 아니므로 세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1. ③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이다. 1문단에서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 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

2. ④

2문단에서는 대다수의 형법학자들은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작위 의무란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행위자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두 부작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3. ③

담당 의사가 만약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가 양심에 따라 어느 한 환자를 선택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위법성 조각설에서는 작위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설은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4. ②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의무 충돌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⑤

㉔는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한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풀이] ㉓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㉑는 '몸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어 드러나지 않도록 하다.'의 뜻이다. ㉒는 '방향을 바꾸어 돌리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㉔는 '생각이나 기운 따위를 제대로 퍼지 못하게 억누르다.'의 뜻이다. ㉕는 '어떤 의미를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㉖는 '무엇을 할 마음을 먹다.'의 뜻이다. ㉗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뜻이다. 반면 ㉘는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의 뜻이다.

To.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고생했을 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곧 6평이 다가오네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내신 끝나고 현타(이런 말 써도 되죠?) 오고, 그 와중에 6평이 조금씩 다가오니까 꽤 많이 긴장할 것 같아서 오늘은 글을 조금 길게 써볼까 합니다. 읽어 보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써 볼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작년에 6월 평가원을 본 후, 거의 절망적인, 그리고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제게 상담을 하러 왔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화법부터 하나도 안 읽혔고, 그러다보니 비문학 풀고 나니 시간이 20분도 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지문도 제대로 못 읽고 그냥 선택지보고 찍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가 공부한 바를 하나도 써 먹지도 못하고 긴장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다 제가 잘못된 것 같았지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냐고. 수능 때 안 그래서. 미리 경험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당연히 엄청난 위로가 될 리가 없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위로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3인, 또는 수능을 앞둔 N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저 학생의 상황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어쩌면 한 번쯤 누구나 겪는 일이지 몰라요. 이런 걸 미리 겪어버린 것에 불과한 거죠. 수능 때 안 그러면 되는 거고요. 수능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6평에서 이런 일로 인해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 밖에는 없는 거죠. 이 이상의 최악의 결과는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실제로 이 학생은 9평에도 긴장했고, 수능 때에도 긴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국어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때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창피하다고요. 긴장해서 지문이 안 읽히는, 그래서 시험을 망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매번 일어나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렇게까지 될 일 없겠지! 수능 때 안 이래서 다행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기 전까지는, 입시라는 기나긴 과정이 끝나기까지는, 어떤 일상생활에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한때 제가 현장 강의에서 자주 했던 말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착하게 살자.”였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수능 한 달 전부터는 별레도 죽이지 말라고. 길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주워서 버리고 그러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라도 잘 보고 싶은 거죠. 뭐. 저는 착하게 사는 것과 성공적인 결과는 분명히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닐 테지만,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강연의 내용의 일부를 하나 소개할게요. 박신양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한 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 보셨을 지도 모르지만, 지금 시기에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서요.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좀 더 생각해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가장 힘든 시간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의 수험생활이 항상 행복할 리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런 시간까지도 사랑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들로 여러분의 1년을 채운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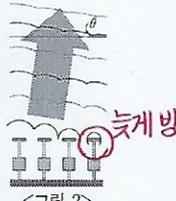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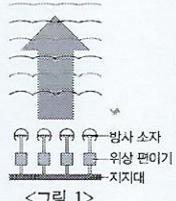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레이더는 전파를 발생시키는 송신기와 전파를 일정한 방향으로 주사하는 안테나 장치 그리고 반사파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기본 구성 요소로 하는 장비이다. 안테나 장치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주사된 전파가 표적에 부딪치면 일부는 흡수되거나 사방으로 산란되고 일부는 레이더로 되돌아온다. 레이더는 이렇

되돌아온 반사파를 분석하여 표적의 위치 정보를 얻는다. 이동거리=속도×시간 이 이동 거리는 이동 속도와 이동 시간을 곱한 값이고 전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므로, 레이더는 반사파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표적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한편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파동의 진동수가 원래 진동수보다 더 높게 관측되고, 파원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원래 진동수보다 더 낮게 관측되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레이더는 이러한 도플러 효과를 고려하여, 표적에서 되돌아온 반사파의 진동수를 측정함으로써 표적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다.

레이더는 전파의 주사 방향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기계식 레이더와 전자식 레이더로 구분된다. 기계식 레이더는 유압 모터가 안테나 장치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주사 방향을 @ 바꾼다. 하지만 특정 방향을 탐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쪽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 유압 모터는 1초에 100~150도가량밖에 안테나 장치를 움직일 수 없으므로 한 번 탐지된 표적을 재탐지하는데 1초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은 기계식 레이더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자식 레이더는 안테나 장치를 고정시킨 채 전자적으로 전파의 주사 방향을 매우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레이더로, 수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PESA)와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AESA)가 있다. 이중 먼저 개발된 PESA는 하나의 안테나를 지지대에 부착하여 안테나 장치를 만드는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수많은 방사 소자를 지지대에 부착하여 안테나 장치를 만드는데, 각각의 방사 소자에는 별도의 위상 편이기가 달려 있다. 위상 편이기는 송신기에서 발생된 전파를 방사하는 시각을



출할 수 있는 장치이다. 방사 소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각에 전파를 방사하면, <그림 1>처럼 각 방사 소자에서 동심원처럼 퍼져 나가는 파면들이 레이더에서 멀어지면서 지지대와 평행하게 정렬된다. 반면 방사 소자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정한 간격만큼 시간을 늦춰 전파를 방사하게 되면, <그림 2>처럼 파면들이 레이더에서 멀어지면서 지지대와 θ의 각도를 이루며 정렬된다. 여기서 파면이란 파동의 마루와 마루 혹은 골과 골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파동은 전파와 같은 구면파(球面波)

의 경우에는 파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그림 1>에서는 지지대와 수직인 방향으로 전파가 주사된다면 <그림 2>에서는 지지대와 90-θ의 각도를 이루며 주사된다. PESA는

디지털 프로세서가 각각의 방사 소자의 방사 시각을 신속하게 계산하여 제어할 수 있으므로, 기계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사 방향을 바꿀 수 있어 탐지된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 소자들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전파의 주사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그룹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사하게 하면 동시에 여러 방향을 탐지할 수 있다. 혹은 어떤 표적이 감지되었을 때 각각의 그룹이 방사하는 전파를 그 표적을 향해 집중시킴으로써, 그것의 위치 정보를 더 정교하게 얻을 수도 있다.

AESA는 수많은 방사 소자 각각에 방사 시각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TR 모듈들을 연결하여 최소 단위의 기기들을 만든 다음, 이것들을 지지대에 부착하여 안테나 장치를 만든 레이더이다. AESA에 디지털 프로세서가 있어 빠른 속도로 각각의 TR 모듈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PESA는 하나의 송신기로 전파를 발생시키므로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주사하더라도 모두 진동수가 동일한 전파이다. 반면 AESA에서는 TR 모듈마다 진동수가 다른 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상대의 전파 방해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AESA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PESA는 진동수가 하나뿐이므로 상대가 그 진동수를 알아내면 그와 유사한 진동수의 방해 전파를 발사하여 PESA의 탐지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AESA는 다양한 진동수의 전파를 주사할 수 있고 또 그 진동수를 신속하게 바꿀 수 있으므로 상대에게 간파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밖에 AESA가 PESA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최근에는 항공기 등에 AESA를 장착하는 것이 훨씬 선호되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AESA에서 반사파를 수신하는 장치는 하나밖에 없다.
- ② 전파는 표적에 부딪치면 ~~반~~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부만 반사.**
- ③ PESA는 탐지 방향의 각도를 초당 100도 이상 바꿀 수 없다.
- ④ 기계식 레이더는 유압 모터가 안테나 장치를 회전시켜 전파를 **발생시킨다.** **전파의 주사방향조절**
- ⑤ 반사파와 방해 전파의 진동수가 동일하면 표적의 위치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PESA의 기능 → 표적 위치 정확하게 찾는 것인데, 방해전파의 진동수 동일하면 수신된 것이 반사파인지 방해전파인지 구별 불가 → 제 위치 찾을 수 없음.**

22. 윗글의 '도플러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관측자가 정지해 있을 때에만 관측된다. **둘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한쪽의 위치 변화는 판단**
- ② 파원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관측되지 않는다.
- ③ 레이더가 표적과의 거리를 측정할 때 고려하는 효과이다. **거리는 직접 측정 불가.**
- ④ 표적이 레이더로부터 멀어지는 동안 반사파의 진동수 측정값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다.
- ⑤ 레이더와 표적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반사파의 속도 측정값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다. **진동수 측정값**

(파악) (일정) (측정) 이동거리=속도×시간 이 이동 거리는 이동 속도와 이동 시간을 곱한 값이고 전파는 빛의 속도로

22-① ② ④ 22-⑤

* 23-①

24-①

24-②

24-④

2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안테나 장치가 고정되어 있다.
- ② ㉡은 TR 모듈이 발생시키는 전파의 진동수를 바꿔 주사 방향을 변경한다. **각각의 TR 모듈마다 진동수 다르게.**
- ③ ㉠은 ㉡에 비해 전파 방해 시도에 의해 탐지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은 ㉠과 달리 안테나 장치에서 주사되는 전파의 진동수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 ⑤ ㉠은 ㉡은 모두 디지털 프로세서의 제어 기능을 통해 동시에 여러 방향을 탐지할 수 있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PESA에서 방사 소자들의 방사 시각을 조율함에 따라 전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전파의 마루 위치로 나타낸 그림이다. **자문 그림(2)을 높은 것과 같은 것**

단, 마루 위치는 (a)에서는 모두 동일하고 (b)에서는 인접한 것들끼리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고 (c)에서는 맨 위와 맨 아래가 동일하고 가운데 두 개가 동일하다. **24-5**

- ① (a)는 방사 소자들의 방사 시각이 동일할 경우를 나타낸 것이겠군. **(자문의 그림(1))**
- ② (b)는 더 **높은** 전파를 방사한 방사 소자가 있는 쪽으로 주사 방향이 바뀐 것이겠군.
- ③ (c)는 레이더가 방사 소자들의 전파를 하나의 지점을 향해 집중시킨 경우에 해당하겠군.
- ④ (a)는 (b)와 달리 안테나 장치의 지지대와 수직인 방향으로 전파가 주사된 경우에 해당하겠군. **(자문의 그림(1))**
- ⑤ (b)는 (c)와 달리 각각의 방사 소자들이 전파를 방사하는 시각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경우에 해당하겠군. **(C)는 각도가 같은 맨위와 맨아래 / 가운데 두 개는 방사시각이 각각 같다.**

25.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 ② 내일 장에 가서 양식을 좀 바꾸어 오너라.
- ③ 은행에 가서 현 돈을 새 돈으로 바꾸었다.
- ④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 ⑤ 통역관이 우리말을 중국어로 바꾸어 주었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30년, 영철이 ㉠ 명나라 등주에 정착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10월, 조선의 진하사* 선박이 북경으로 가기 위해 등주에 머물렀다. 뱃사공 중에 이연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영철과 같은 고향 마을 사람이었다. 영철은 ㉡ 조선의 사행선이 등주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무슨 소식이나 얻어들을까 하여 배를 찾아갔다. 무심코 배를 둘러보던 영철은 배 위에서 한 낯익은 사람을 발견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고향 친구 연생이었다. 영철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연생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다. 처음에는 연생이 영철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영철임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반가워하다가 서로의 소식을 물었다. 연생은 그토록 궁금해하던 고향 소식을 영철에게 전해 주었다. 그 내용은 곧, 영철의 아버지는 안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할아버지는 동생 영화

의 아들 이룡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외가로 돌아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철은 10여 년 만에 듣는 가족 소식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통곡하였다. 한참 뒤 정신을 수습한 뒤에 영철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고, 연생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였다.

“여보게, 연생이. 내가 ㉢ 후금 땅에서 도망하여 구사일생으로 이곳까지 온 것은 오로지 이곳에서 조선의 사행선을 얻어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네. 이제 천만다행으로 친구를 만났으니, 원컨대 차네는 제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게.”

연생은 이야기를 들은 뒤, 사신 일행이 북경을 다녀온 뒤 돌아오는 배편에 태워 주기로 약속하였다. 영철이 연생을 만난 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 눈물 자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이상하게 여겼으나 더 물어보지는 않았다.

이듬해 봄, 조선의 사신 일행이 북경에서 명나라 황제를 뵈고 등주로 돌아왔다. 그동안 떠날 날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영철은 이제 막상 ㉣ 배가 다음 날 아침 조선을 향해 떠난다는 소식에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날 밤 영철의 아내는 등촉을 밝히고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평상시와 달리 초조해하고 조바심을 내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등주 부둣가에 ㉤ 조선의 사행선이 정박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남편이 자신과 자식들을 버려두고 조선으로 가는 일이 생길까 두려웠다. 영철 역시 아내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심한 갈등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복잡하였다.

(중략)

이듬해 북경에 다녀온 사신 일행이 등주로 돌아오자 영철의 아내가 다시 와서 물었다.

“조선이 병자년 전쟁에 청나라에 항복하여 이제 이 뱃길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원컨대 그대는 제발 ㉥ 낭군님의 소식을 전해 주어 내 마음을 풀어 주시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상징하는 소품이다.
- ② ㉡의 장정들이 '준구'가 있을 것으로 여긴 장소이다.
- ③ ㉢은 공간 범위는 고방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 ④ ㉣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한다.
- ⑤ ㉤는 '윤보'가 '삼수'를 살려 둔 이유이다.

32.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햇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이동에 맞춰 느리면서 장엄한 느낌의 음악을 장면에 삽입해야겠어.
- ② ㉡는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표정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겠어.
- ③ ㉢은 인물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통해 상황의 긴박함을 나타내야겠어.
- ④ ㉣과 ㉤는 화면에 인물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를 통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야겠어.
- ⑤ ㉤는 환한 새벽빛을 향해 가는 인물들을 통해 관객들이 인물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장면을 구성해야겠어.

[33~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반면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취지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나타내고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다시 양심을 표명하거나 혹은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인 '양심 표명의 자유'와 양심에 반(反)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인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인 '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고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즉 양심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고 내심(內心)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사회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지만, 양심이 외부로 나타날 때에는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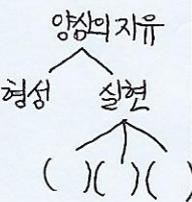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양심 형성의 자유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심의 형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단지 양심 형성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보호하는 취지가 반감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해석의 ㉡다수설에서는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실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게다가 기본권이라고 해도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어떤 법률의 기본권 제한이 이 한계를 준수했다면 합헌적 제한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헌적 제한이 된다. 헌법 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기본권 제한이 합헌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 금지 원칙' 같은 위헌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과잉 금지 원칙에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원칙, 제한의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 제한의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는 양심을 내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에서도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 의식을 말하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소의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느낄 정도의 무게와 진지함을 갖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양심을 주관적·개방적·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심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옳고 그름의 기준인 도덕관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과 배치되는 도덕관념에 따라 양심을 형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양심의 자유가 문제 되는 것은, 대개 특정 사안에 관해 사회 내 다수의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할 때이다. 헌법 재판소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양심 형성의 기초임을 명시하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양심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심은 비합리적 믿음이나 일관되지 않은 가치 체계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고 헌법은 이러한 양심도 보호해야 한다. 만약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가치 체계에 기초한 양심만 보호의 대상으로 삼으면 일단 어떤 가치 체계가 합리적이고 정합적인지 국가 혹은 법원이 판단해야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19조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보호 대상인 양심의 원천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하는데, 헌법 재판소의 양심 규정 역시 이러한



36-2

35-1

35-1, 2, 4

35-5

31-1 헌법제37조 위헌사유 금지원칙

31-2

34-2

36-4

34-4

34-7

34-5

38-4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양심이나 헌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양심에 대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정도의 무게와 진지함을 갖춘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격적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된 양심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양심의 내용이 아니라 양심의 형식을 규정한 것이다. 양심상 옳다고 여기는 내용과 관계없이,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지만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3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서로 다른 두 학설을 통합하여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헌법 제19조와 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변화해 온 과정을 개관하고 있다.
- ④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양심의 자유에 관한 상이한 학설을 소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의미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 ⑤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기본권의 의미와 기본권의 제한에 수반되어야 하는 각종 원칙에 관한 학자들의 논쟁을 서술하고 있다.

3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 재판소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 기관이 판단X,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판단.
- ②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는 양심을 ~~내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규정.
- ③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헌법 재판소의 양심 규정에 반영되어 있다.
- ④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양심이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의무를 일컫는다.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다.
- ⑤ 헌법에 따르면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수용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헌법은 이러한 양심도 보호해야 한다.

35. ㉠과 ㉡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
- ② ㉠은 헌법 제19조가 양심 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양심 형성의 자유라고 여김)
- ③ ㉡은 양심 실현의 자유가 양심 형성의 자유의 마찬가지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양심형성의 자유는 제한될 수 X.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차피 절대적으로 보장, ㉡의 주장은 '양심 실현의 자유'에 더 큰 힘. ㉠과 ㉡은 모두 개인의 양심이 외부로 나타날 때에는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모두 동의하는 의견2.

3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석방 심사 대상이었던 갑은 복역 중 준법 서약서 제출을 거절하여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갑은 가석방 심사 시 준법 서약서를 요구하는 가석방 심사에 관한 법률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재판소는 준법 서약이 단순한 법적 의무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관 7인의 의견에 따라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단, 재판관 2인은 갑의 생각이 사회 내 다수의 도덕관념과 배치되는 것이라 해도, 그러한 생각에 기초한 양심을 표명하거나 변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헌법서약은 양심의 자유침해 주장(합헌주장)

→ 양심표명의 자유' 침해 주장

- ① 헌법 재판소는 가석방 심사에 관한 법률이 헌법 제37조 2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군. 헌법 제19조.
- ②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준법 서약서 제출 요구가 작위 ~~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군. 양심표명의 자유'
- ③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7인은 갑의 생각이 사회 내 다수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었군.
- ④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7인은 갑이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갑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했었군.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는 행위 = 양심에 반하는 행위(지문)
- ⑤ 갑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것은 가석방 심사에 관한 법률이 자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표명할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군. 갑은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된다고 여김

37.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37조 2항을 지키기 위해 헌법 재판소가 활용하는 기준이다.
- ②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다. → 헌법 제37조 2항 내용,
- ③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의 행사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잉금지원칙X
- ④ 헌법 재판소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한다.
- ⑤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의 목적이 정당해야 한

3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은 인격적 정체성과 무관한 양심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양심 실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양심 형성의 자유조차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사회 내 다수의 도덕관념보다 소수의 도덕관념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④ 개인이 양심을 형성할 때조차 외부의 기준에 맞는 가치 체계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 ⑤ 비합리적 믿음에 기초한 양심이 합리적 가치 체계에 기초한 양심보다 더 무겁고 진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 위쪽 지문의 내용) '만약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가치 체계에 기초한 양심만 보호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기준을 국가나 법원이 정해야 한다.'
 ↓
 외부의 기준에 기초하여 개인의 양심을 판단하게 된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네상스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회화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화가들은 3차원 공간의 대상을 2차원의 화폭에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원근법 같은 회화 기법을 고도로 발달시켰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대상의 정확한 재현이 회화의 목표라는 생각에 균열이 생겼다. 이로부터 서양 회화는 점차 대상의 재현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결국 화폭에서 대상성, 즉 대상의 재현이 거의 사라지는 추상 회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인상주의자들은 야외의 빛에 ㉡ 노출된 대상이 우리의 눈에 비치는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고자 하였는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하기보다 대상이 화가의 눈에 '비치는 대로' 그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대상을 주관적으로 ㉢ 변형하는 경향에 몰입을 띠었다. 이후 후기 인상주의는 화가의 주관적 정서와 의식이 투영된 형상으로 대상을 그렸고 표현주의는 대상 자체보다는 화가의 감정을 화폭에 담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입체주의는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기하학적 형상으로 환원하여 화폭에 재구성함으로써, ㉣ 대상성의 파괴를 주된 특징으로 가지는 추상 회화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상 회화의 선구자 중 한 명인 파울 클레는 '가시적인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것'에 회화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이나 꿈, 환상, 정서 같은 비가시적인 것이 클레 그림의 주제가 되었다. 설령 그의 그림에 자연의 대상을 환기하는 형상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은 그 대상과 닮게 그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형상은 선묘(線描) 기법에 의해 부피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그러졌고, 그런 형상의 배후에는 자연의 무엇과도 유사하지 않은 도형들이 배치되기도 하였다. 클레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연의 대상을 그것과 닮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와 형태의 조합 및 배치를 통해 어떤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때의 균형이란 화폭에 ㉤ 구현된 형상들의 미적 균형일 수도 있고 화가 자신의 심리적 균형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는 양차 세계 대전의 와중에서 현실이 참혹하게 느껴질수록 추상 회화를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여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러한 작품 중 하나인 <보름달이 뜬 밤의 화재>에서 보름달은 노란색으로 채워진 원으로, 화재 현장은 붉은색으로 채워진 십자가 형상으로 단순화되어 표현되고 화폭의 나머지 부분은 주택가를 연상시키는 격자무늬로 그려졌다. 그런데 제목이 그림의 소재를 환기하고 회화의 형상이 그 소재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대담한 생략과 단순화를 통해 대상의 추상화가 ㉥ 현격하게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화폭에서 대상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러한 특징은 클레의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말레비치는 회화의 의의가 어떤 대상과도 관계가 없고 특정 감정으로 전화(轉化)되지도 않은 순수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으므로 화폭에 대상이 묘사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과거 미술의 잔재인 대상성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다. 그는 대상성을 무(無)로 돌리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회화를 지향하려는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절대주의'라고 명명하였다. 절대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은, 3차원 공간의 구체적 대상을 환기하는 형상을 화폭에서 완전히 ㉦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생각은 회화의 본질이 화폭의 평면성에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말레비치는 화폭의 평면성에 어울리는 형태를 사각형이나 원, 십자가 같은 도형이라고 보았는데, 이 중에서도 사각형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생각했다. 3차원 공간의 모든 대상의 기본적 형태는 정육면체이고 정육면체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는 단순한 사각형이기 때문이다. <흰 바탕 위의 검은 사각형>은 제목 그대로 하얀 바탕에 검은색 사각형을 그린 것으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훗날 말레비치의 이러한 극단적인 추상 회화는 클레의 온건한 추상 회화와 함께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진기의 발명은 원근법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 ② 말레비치는 정육면체가 대상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았다.
- ③ 클레는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가 회화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 ④ 인상주의는 대상의 객관적인 모습을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 ⑤ 후기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작품에는 화가의 주관성이 반영되어 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